

AI 확산에 따른 닭·오리 사료운반차량 운행방식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가금류용 사료를 축종별로 구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사료차량 운행방식을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.

1. 가금류용 사료는 축종별로 구분하여 차량을 운행

* 닭, 오리 등 축종 구분없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금지

〈사료 형태별 운반 범위〉

○ 벌크 형태 운반 범위

차량	농가	닭 농가	오리 농가	소 농가	돼지 농가
닭 사료	○	×	×	×	○
오리 사료	×	○	×	×	○
소 사료	×	×	○	○	×
돼지 사료	△ (둘 중 한 축종만 가능)			×	○
닭 + 돼지 사료	○	×	×	×	○
오리 + 돼지 사료	×	○	×	×	○

○ 지대 및 톤백 형태 운반 범위

차량	농가	닭 농가	오리 농가	소 농가	돼지 농가
닭 사료	○	×	○	○	○
오리 사료	×	○	○	○	○
소 사료	○	○	○	○	○
돼지 사료	○	○	○	○	○

2. 사료운송 시 1회에 1농가만 배달방문, 1회 적재 후 2농가 이상 배달금지

* 1농가 방문시마다 반드시 사료공장에서 SOP에 따라 소독 실시 후 배달

* 1회 소독 후 여러 농가 방문 금지

☞ 벌크, 톤백, 지대 형태 모두 가금류(닭, 오리 등)만 해당

[관련 규정]

〈닭·오리 사료 운반차량 방역수칙〉

■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자(대리점, 지역 농축협 등)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

- ① 닭과 오리의 사료는 반드시 구분하여 공급하고, 오리사료 운반차량의 닭농장 출입을 금지함
- ② 오리사료는 반드시 전량 지대포장 형태로 공급할 것
- ③ 벌크 및 톤백형태로 운반할 경우에는 시도(축산과)에서 “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”으로 지정 받아야 함
- ④ 돼지사료 벌크운반차량으로 오리사료 운반은 가능하나, “오리사료전용운반차량”으로 지정받아야 하며, 닭 및 소 사료의 운반은 금지됨
- ⑤ 사료공장·대리점·농장 출입때 마다 소독 실시
- ⑥ 시도 발급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“전용차량 스티커”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

■ 농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

- ①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“전용차량 스티커” 미부착 사료운반차량의 농장 출입을 차단할 것
- ② 아울러,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
- ③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

출입시 소독을 실시

- ④ 자가 트랙터·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측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

〈사료공정서의 반추동물용 사료 운반 규정〉

제19조(동물성사료의 교차오염방지) ① 제조업자는 「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」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사료(이 조에서는 ‘동물성사료’라 한다)를 반추동물사료에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(원료투입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)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
2. 제조업자·사료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1에서 규정한 전용차량만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, 당해 벌크차량의 번호를 기록·관리(다만,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3. 제조업자·사료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 또는 동물성사료를 톤백 또는 지대형태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2에서 규정한 것을 사용
- ② 반추동물이외의 사료제조시 제20조에서 정한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